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2.9.4] [국무총리훈령 제592호, 2012.9.4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소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추진단을 설치하고,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추진단(이하 " 추진단 "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, 정부전산센터 및 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의 건립사업(이하 "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사업 " 이라 한다)을 위한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소재 유휴 국유지의 활용계획(이하 " 공주 유휴 국유지 활용계획 " 이라 한다) 수립 및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
2.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사업을 위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 · 군관리계획 입안 및 도시 ·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
3.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사업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관한 사항
4.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사업에 필요한 도로, 상하수도 및 전기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사업을 위한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,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
6.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추진단의 구성) ① 추진단에는 단장 1명과 단원을 둔다.

②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기관 · 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 등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자문위원회) ①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사업에 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사업과 관련된 소방 · 방재 · 정보 · 통신 및 건설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.

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단장은 공주 유휴 국유지 활용계획의 수립 · 시행 및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진단 단원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

②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제6조(조사 · 연구의 의뢰)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·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보수 등)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· 단체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.

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· 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.

부칙 <제592호,2012.9.4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